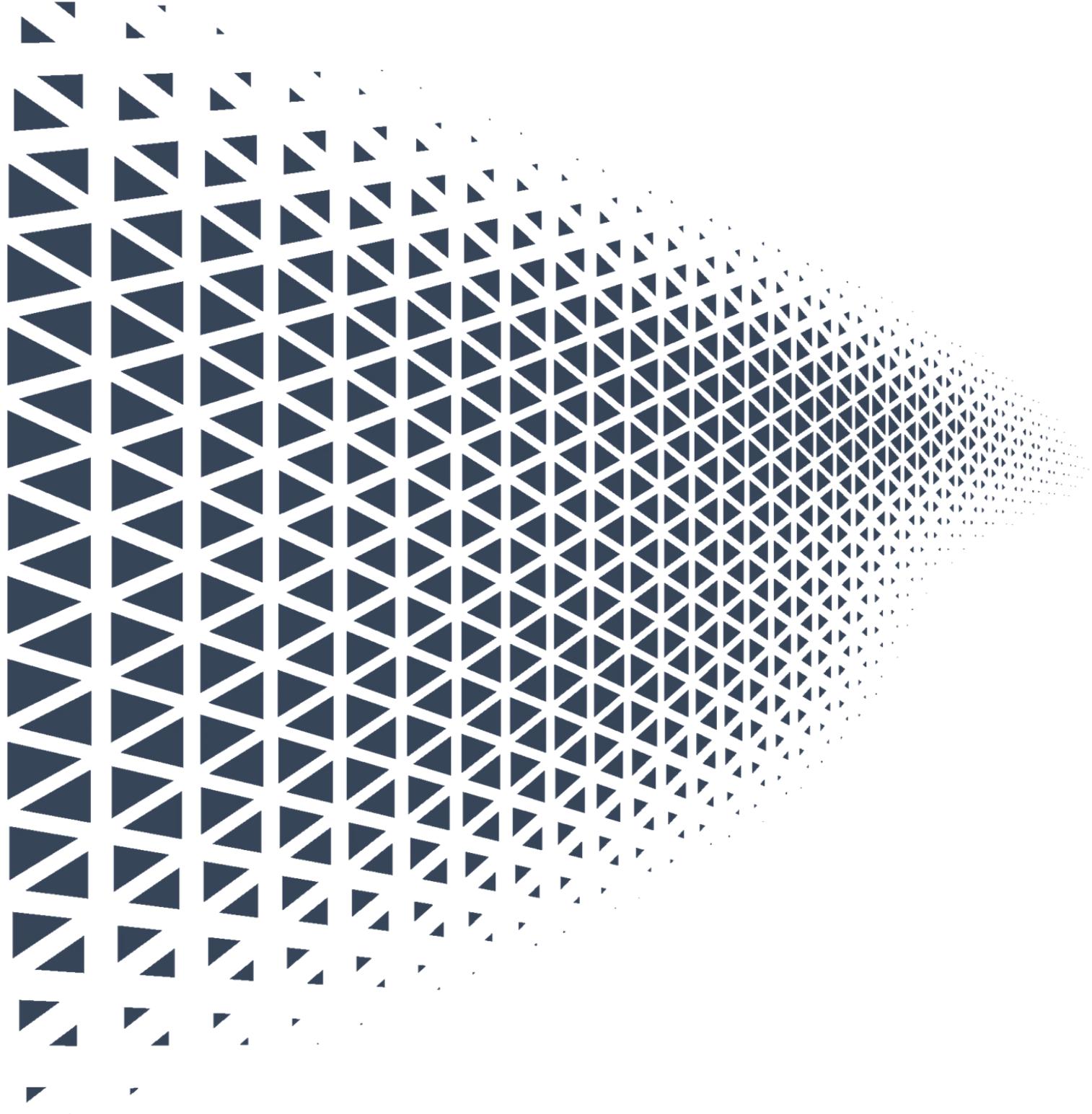


VISA FINDER

입국목적별 구비서류안내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목 차 Contents

1	유의사항	2
2	사증발급 Q&A	3
3	사증종류별 안내	4
4	복수사증·간이신청 대상자	
	- 복수사증	5
	- 간이신청 대상자	11
5	사증발급인정서	15
6	외교·공무 (A-1, A-2)	16
7	단기방문	
	- 일시취재 (C-1)	17
	- 단기초청 (C-3-1)	18
	- 일반관광 (C-3-9)	19
	- 의료관광 (C-3-3)	20
	- 단기상용 (C-3-4)	26
	- 단기취업 (C-4-5)	27
8	유학·어학연수	
	- 유학 (D-2)	28
	- 어학연수 (D-4-1)	33
	-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 (D-4-3)	35
9	투자·경영·구직	
	- 법인에 투자 (D-8-1)	36
	- 무역경영 (D-9-4)	37
	- 구직활동 (D-10)	38
10	방문동거	
	- 방문동거 (F-1)	39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F-1-5)	41
	- 거주 (F-2)	43
	- 동반 (F-3)	45
11	결혼이민 (F-6)	47
12	별첨	
	- 외국인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대학 및 모집 제한대학	50
	- 결핵검사 대사관 지정병원 정보	52
	- E-9 자격 사증신청자 건강확인서	55
	- 납세실적 100대 우수기업 2022	56
	- 결혼이민(F-6) 사증발급 요건 심사면제 요청서	57
	- 비자신청센터(KVAC) 및 공인대행기관 정보	58



유의사항



사증신청 제한 기간 준수 필요(공통사항)

- ① 사증신청 불허자: 불허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신청가능 ('19.9.16. 시행)
② 결혼이민 사증신청 불허자: 불허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1. 사증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비자신청센터(KVAC) 또는 공인대행기관(10곳)을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사증 신청 및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비자신청센터 및 공인대행기관을 통해서 안내 및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비자신청센터(KVAC) +976) 7766-8888, 공인대행기관(10곳) 정보(별첨6 참고)
2. 여권 잔여 유효기간은 사증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3. 사증 신청시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졸업장, 출생증, 결혼증 등은 심사 후 반환 하나 나머지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는 해당 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에만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4. 몽골정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는 E-Mongolia(무인발급기) 출력본을 제출해야 함. 단, E-Mongolia(무인발급기)에서 출력이 되지 않는 증명서는 발급기관 직원에게 발급받은 경우 해당 증명서와 원본(출생증, 결혼증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함.
※ E-Mongolia에서 영문 증명서를 출력한 경우 번역본 제출 불필요.
5. 사증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를 가감할 수 있으며, 신청인 등과 면담을 실시할 수 있음.**
6. 위조나 변조,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및 사증브로커 활동 등이 **2회 이상 발견될 경우 해당자는 몽골국내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고, 한국 사증관련 규정(지침)에 따라 한국 입국이 제한됨. ('19.9.16. 시행)**
7. 사증발급신청서에 입국목적, 연락처, 직업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사증발급 불허사유가 되며 일정 기간 사증발급이 제한됨.**
8. 사증을 소지했다 하더라도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공·항만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9. **장기체류자격의** 사증을 신청하거나 법무부가 지정한 체류자격의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당관 지정 병원(별첨2 참고) 결핵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외대상: 외교공무사증 신청자, 6세 미만 소아, 임산부)
※ 체류기간이 90일 이하라도 장기체류자격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임.
- 결핵진단서 유효기간: 사증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10. **복수국적자(한국·몽골국적 보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몽골 여권에 한국사증을 발급하지 않음(한국여권이 없는 경우 대사관에 여권 신청)
- 단, 한국여권으로 입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단기일반(C-3) 비자 신청 가능.
11. 재외공관 소속직원(행정직원 포함)에게 직접 또는 유선 등을 통해 위력이나 위계를 행사하여 사증관련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분됨. ('19.12.2. 시행)
① (폭언, 폭행, 협박 등 위력행사) 사증불허 및 사증신청제한(최소 1년, 최장 3년)
② (허위진술, 위·변조 서류제출 등 위계행사) 사증불허 및 사증신청제한(최소 6개월, 최장 3년)
※ 초청자의 위력, 위계행위도 사증신청자의 사증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사증 발급 Q&A

1 대한민국 사증을 받지 않고 한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 ◇ 관광/통과, 친지방문, 상용, 의료관광, 행사참석 등 목적으로 단기간(90일 이하)동안 한국에 방문하고자 할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한다면 사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체재비 이상의 금액을 보수로 받는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 몽골 정부에서 발급한 유효한 외교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자로 공무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자 (90일 이하)
 -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또는 유럽 32개국의 유효한 입국사증(재입국허가서 포함)을 소지하고 한국을 경유하여 동 국가로 출국하려는 자 또는 동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한 후 한국행 직항노선을 이용하여 한국을 경유하여 자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하려는 자(30일 이하)
- ※ 호주 E-visa 소지자는, 호주 이민당국의 사증정보 확인시스템(VEVO, online.immi.gov.au)을 통해 호주 사증의 유효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
- ※ 유럽 32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2 한국에 자주 방문하는데, 복수 사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 ◇ 1년에 3회 이상 관광/통과, 친지방문, 상용, 행사참석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방문할 필요성이 있는 자로 복수사증 발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복수사증 발급요건(바로보기)

3 제출서류가 많은데, 간편하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 ◇ 관광/통과, 친지방문, 상용, 의료관광, 행사참석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방문할 필요성이 있는 자로 간이 신청대상에 해당할 경우, 경제력 입증서류 등 구비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 ▶ 간이신청대상(바로보기)

4 사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사증 신청은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KVAC) 또는 사증 신청 공인대행기관(10곳)에 방문해서 신청하며, 구비서류 및 사증 신청 관련 상담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 비자신청센터(KVAC) 및 공인대행기관 정보(바로보기)

5 사증 신청 결과가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 ◇ 사증 신청 결과는 신청하신 체류자격 별로 그 심사기간이 상이하므로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overseas.mofa.go.kr/mn-ko/index.do)



사증 종류별 안내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Visa Finder는 신청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본인의 사증종류와 구비서류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Visa Finder는 몽골 국민들이 주로 신청하는 사증 종류별 신청 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여기에 안내되어 있지 않은 사증 종류와 신청서류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또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www.hikorea.go.kr)의 사증안내 자료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 ⇒ 사증/초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사증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사증

장기사증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91일 이상**의 사증



외교·공무

외교·공무(A-1, A-2)



단기방문

일시취재(C-1) 단기초청(C-3-1) 일반관광(C-3-9)
의료관광(C-3-3) 단기상용(C-3-4) 단기취업(C-4-5)



유학

유학(D-2) 어학연수(D-4-1)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D-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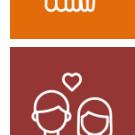
투자·경영·구직

법인에 투자(D-8-1) 무역경영(D-9-4)
구직활동(D-10)



방문동거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결혼이민자의 가족초청(F-1-5)



결혼이민

결혼이민(F-6-1)



1. 복수사증

1) 발급대상: 아래 'A ~ Q'항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

- A. 우리나라를 방문한 경력이 있는 자
- B.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임직원(과장급 이상)
- C.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항공사·선사의 임직원(과장급 이상)
- D. \$10,000 이상 사용한도의 국제신용카드 소지하고,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사용실적이 \$2,000 이상인 자(현금서비스 제외)
- E. 우리나라와 자원·에너지 개발·판매 등을 위한 기업의 설치,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상담·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 F. 국적취득자의 부모 및 자녀, 몽골 거주 국민의 배우자 또는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 이상 정상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 배우자의 부모 및 미성년 자녀(19세 미만)
- G.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
- H. 기자, PD, 편집인 등 공관에서 인정한 언론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자
- I. 연간 납세실적 5억투그릭 이상 기업 또는 납세실적 100대 우수기업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자
- J. 대한민국 전문학사 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K. 최근 6개월 간 사회보험증 상 월평균 급여가 도시 근로자 월평균임금(2023년 연평균 기준 약 223만 투그릭)의 2배 이상인 사람 중 공관에서 인정하는 자
- L. 유명 예술가·연예인 및 운동선수 중 공관에서 인정하는 자(해당 분야에서 공훈을 세운 자 등)
- M. 부동산, 금융재산(현금) 등 개인 자산 5억 투그릭 이상 보유한 자
- N. A~M, Q 요건 복수사증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19세 미만)
- O.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또는 통산 10회(최근 2년이내 출입국기록 1회 반드시 포함) 이상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빈번 출입국자)
- P. 대한민국 내에 배우자나 칙계가족이 1년 이상 현재 장기체류하고 있는 자
- Q.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방문사증을 소지하고 동 OECD 회원국을 방문한 경력이 있는 자

2) 발급내용: 단기(C-3-1), 일반관광(C-3-9)

3) 사증 유효기간: 3년/ 5년

- 5년 복수사증: 유효기간 3년 복수사증을 받고, 2회 이상 방한경력이 있고 체류실태가 건전한 자, **빈번 출입국자 해당 신청자**

※ 복수사증 체류기간 중 불법취업이 의심(입국하여 90일간 계속해서 체류하는 자 등)되거나 불법 체류할 가능성 이 있는 경우에는 사증발급 제한

※ 3년, 5년 복수사증신청은 소지하고 있는 복수사증 만료일 전 1개월부터 신청가능(예시: 2025.01.31 만료일인 경우, 2025.01.01부터 신청가능)

4) 1회 체류기간: 90일(상기 O항목 빈번 출입국자는 5년 복수사증, 체류기간 30일)

A 우리나라를 방문한 경력이 있는 자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신청자격 입증서류: 경제력 입증서류 또는 출입국사실 입증서류(사증발급확인서 및 출입국심사인 날인된 면의 사본)
 4. 혼인관계증명서
 5. 경제력 입증자료
 - 사업자: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장인: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증명서
 - 기타: 사증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간 유지된 본인명의의 은행거래 내역서 등(공동명의 불가)
- ※ 기준 복수사증 만료 전에 복수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경제력 입증자료 제출 생략
- ※ 무사증 입국자(상륙허가 포함)는 방한 방문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의료관광(C-3-3) 사증의 경우, 순수 치료비가 한화 200만원 이상 지출한 경우에만 횟수에 산입하되 다만, 사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기록만 산입함. 그 이외 체류자격으로 사증을 발급받고 한국을 방문한 경우는 횟수에 산입함.

B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임직원(과장급 이상)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신청자격 입증서류: 재직증명서 및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4. 혼인관계증명서

C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선사의 임직원(과장급 이상)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신청자격 입증서류: 재직증명서 및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4. 혼인관계증명서

D \$10,000 이상 사용한도의 국제신용카드 소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사용 실적이 \$2,000 이상인 자 (현금서비스 제외)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신청자격 입증서류: 은행확인서(신용 한도 표시), 거래내역서, 신용카드 사본
4. 혼인관계증명서

E

우리나라와 자원·에너지 개발·판매 등을 위한 기업의 설치,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상담·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신청자격 입증서류:
 - 자원·에너지 관련 기업임을 입증하는 자료(사업자등록증, 개발특허증 등)
 - 한국과의 자원·에너지, 개발·판매 관련 계약서
 - 재직증명서 및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4. 혼인관계증명서

F

국적취득자의 부모 및 자녀, 몽골 거주 국민의 배우자 또는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 이상 정상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 배우자의 부모 및 미성년 자녀(19세 미만)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가족관계 입증서류
4. 신청자격 입증서류:
 - 국적취득자: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출입국사무소 발급)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 교민: 여권사본, 거주등록증 사본
 -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 이상 정상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양국 혼인관계증명서

G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신청자격 입증서류:
 - (의사) 재직증명서, 의사자격증
 - (변호사) 재직증명서, 몽골 변호사협회 변호사 자격증, 몽골 법률가협회 확인서
 - (교수) 재직증명서, 총장 명령서(4년제 이상 국립·사립대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 자)
※ 계약직이나 시간강사, 초빙강사, 객원교수 등 한시적 교원 불가
4. 경제력 입증자료
 - 사업자: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장인: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증명서
 - 기 타: 사증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간 유지된 본인명의의 은행거래 내역서 등(공동명의 불가)
5. 혼인관계증명서

H 기자, PD, 편집인 등 공관에서 인정한 언론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자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신청자격 입증서류:
 - 재직증명서,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원증(기자, PD, 편집인 등) 사본
 - 기자총연합회 공문서, 기자총연합회 회원증 사본
 - 소속 언론사 납세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 ※ 공관에서 인정하는 언론인: 기자총연합회 회원이며, 언론인으로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자

I 연간 납세실적 5억투그릭 이상 기업 또는 납세실적 100대 우수 기업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자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신청자격 입증서류:
 - 기업 전자납세증명서(전년도 01.01~12.31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4. 혼인관계증명서
- ※ 몽골 납세실적 100대 우수기업 목록 참고(별첨4)

J 대한민국 전문학사 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신청자격 입증서류: 학위증 원본 및 사본, 성적증명서, 해외체류비자 사본 및 출입국스탬프 사본 또는 출입국확인서
 4. 혼인관계증명서
- ※ 몽골 이외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의 경우 학위증 사본에 아포스티유 공증 또는 출신학교가 속한 한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학위 등 입증서류
- ※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 인증보고서(중국내 학력 학위 취득자의 경우)

K 최근 6개월간 사회보험증 상 월평균 급여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임금(2023년도 연평균 기준 약 223만 투그릭)의 2배 이상인 사람 중 공관에서 인정하는 자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신청자격 입증서류: 재직증명서,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회보험 납부내역)
4. 혼인관계증명서

L 유명 예술가·연예인 및 운동선수 중 공관에서 인정하는 자(해당 분야에서 공훈을 세운 자 등)

▶ 공관에서 인정하는 자

- (연예·예술분야) 국가훈장을 수여 받은 자(노동영웅, 정부훈장(State laureate), 국민배우, 공훈배우, 예술 공헌자) 등 공훈인물
- (스포츠분야) 국가훈장을 수여 받은 자(노동영웅, 공훈선수, 공훈코치), 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메달수상자, 세계선수권대회의 메달수상자, 아시안게임의 메달수상자, 각종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메달수상자 공훈인물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신청자격 입증서류:
 - 훈장 사본, 표창장 수여 확인서 사본
 - 재직증명서,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납부 시 제출)
4. 경제력 입증자료
 - 사업자: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장인: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증명서
 - 기 타: 사증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간 유지된 본인명의 은행거래 내역서 등(공동명의 불가)
5. 혼인관계증명서

M 재산(현금, 금융, 부동산 등), 개인 자산 5억 투그릭 이상 보유한 자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신청자격 입증서류:
 - 부동산 목록 조회서, 부동산 조회서, 부동산 등기부, 국가 인증 재산평가 감정소의 확인서(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최근 6개월 현금보유액: 평균잔액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N 'A~M, Q' 요건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19세 미만)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신청자격 입증서류:
 - 복수사증 소지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 복수사증 소지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출생증명서
 - 복수사증 소지자의 여권 인적 사항 및 사증발급확인서

O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또는 통산 10회(최근 2년이내 출입국기록 1회 반드시 포함) 이상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

- 사증 유효기간/1회 체류기간: 5년 복수/30일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신청자격 입증서류: 대한민국 출입국사실 입증서류(비자 및 출입국심사인 날인된 면의 사본)
 4. 혼인관계증명서
- ※ 다만,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계절근로자(C-4, E-8) 등 단순노무 자격, 선원자격 및 상륙허가 등으로 출입국한 기록은 산입에서 제외

P

대한민국 내에 배우자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이 1년 이상 현재 장기체류하고 있는 자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신청자격 입증서류:
 - 국내 거주중인 직계가족의 외국인 등록증 사본(잔여 만료일 6개월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D-2~D-4 계열 체류자격인 경우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 E 계열 체류자격인 경우 재직증명서
4. 경제력 입증자료
 - 사업자: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장인: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증명서
 - 기 타: 사증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간 유지된 본인명의의 은행거래 내역서 등(공동명의 불가)
5. 혼인관계증명서

Q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방문사증을 소지하고 동 OECD 회원국을 방문한 경력이 있는 자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신청자격 입증서류: 사증 및 출입국 도장 날인 면 원본
 4. 경제력 입증자료
 - 사업자: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장인: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증명서
 - 기 타: 사증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간 유지된 본인명의의 은행거래 내역서 등(공동명의 불가)
 5. 혼인관계증명서
- ※ 방문 사증 인정 OECD 22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호주



2. 간이신청 대상자

1) 발급대상: 아래 'A ~ J'항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

-
- A.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주관하는 행사에 초청을 받은 자
 - B. 대한민국정부의 승인을 받은 국제기구의 초청을 받은 자
 - C. 관용, 외교여권 소지자이나 공무 외 다른 목적의 일반여권으로 방문하려는 자
 - D. 복수사증 요건해당자 또는 복수사증 발급경력자
 - E. 빈번출입국자(최근 2년 내 4회 이상 또는 통산 10회 이상 방문자)
 - F. 최근 1년 이내 대한민국을 2회 이상 단기간 방문한 자로서 한국과 거래실적이 입증되는 자
 - G. 국민(국적취득자) 및 국민의 배우자(F-6)의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19세 미만 자녀)
 - H. 거주자격자(F-2), 영주자(F-5)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19세 미만 자녀)
 - I. 취재(D-5), 종교(D-6), 주재(D-7), 투자(D-8), 무역경영(D-9), E계열(E-9 제외)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19세 미만 자녀)
 - J. 'C~F' 요건 해당자의 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19세 미만 자녀)
-

2) 발급내용: 단기초청(C-3-1), 일반관광(C-3-9)

3) 사증종류 (유효기간/체류기간): 단수(S): 3개월/90일, 더블(D): 6개월/90일

4) 유의사항: 상기 신청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거 범법사실, 출입국 및 체류실태 등을 고려, 불법체류 또는 위법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불허되며,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A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회의 참가, 일반연수, 친선 경기 참가 등의 목적으로 초청을 받은 자

신청인 구비서류

-
-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 2. 여권/여권사본 1매
 - 3. 양국 해당단체의 협조공문
 - 몽골측: 피초청 단체소개, 행사개요, 경비부담 사항 및 참가자 명단 포함, 재직증명서,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 한국측: 행사개요, 경비부담자(항공료, 체류경비에 대한 사항), 참가자 명단 포함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 번호증) 사본: 초청기록관리 상 반드시 필요
 - 4. 혼인관계증명서
- ※ 초청이란 invitation letter의 의미(방문허가의 의미가 아님)
-

B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국제기구의 초청으로 입국하는 자**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양국 해당단체의 협조공문
 - 몽골측: 소개, 행사개요, 경비부담 사항 및 참가자 명단 포함
 - 한국측: 행사개요, 경비부담자(항공료, 체류경비에 대한 사항), 참가자 명단 포함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 번호증) 사본: 초청기록관리 상 반드시 필요
4. 재직증명서 및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재직입증 서류
5. 혼인관계증명서

C 외교·관용여권 소지자이나 일반 여권으로 관광, 치료, 친지방문 등 공무 외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신청자격 입증서류: 유효한 외교/관용여권 사본 제출(유효기간 최소 3개월 이상), 재직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D 복수사증 요건해당자(A~M, P, Q) 또는 복수사증 발급경력자(만료일 기준 5년 이내)**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신청요건 입증자료(사증 및 출입국 도장 날인 면 사본)
4. 혼인관계증명서

E 빈번출입국자(최근 2년 내 4회 이상, 통산 10회 이상 방문자)**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신청요건 입증자료(사증 및 출입국 도장 날인 면 사본)
 4. 혼인관계증명서
- ※ E9, E10, C4로 출입국한 경우는 횟수에서 산입제외

F 최근 1년 이내 대한민국을 2회 이상 단기간 방문한 자로서, 한국과 거래실적이 입증되는 자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한국회사와 거래실적 입증서류
4. 출입국 도장이 날인된 여권 사본
5. 혼인관계증명서

G 국민(국적취득자) 및 국민의 배우자(F-6)의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 신청대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자녀(배우자의 자녀인 경우 만 19세 미만 자녀만 해당)
- 사증종류: C-3-1(단기초청)

※ 국민의 배우자가 초청자와 결혼동거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는, F-6 발급대상임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출생증명서(E-Mongolia 출력본 제출을 기본으로 함)
4. 가족관계 입증서류(배우자 초청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초청인 구비서류

1. 초청장(원본):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아래내용 필수 기재
 - 피초청인과 초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피초청인과의 관계, 초청기간, 초청목적, 보증사항 등
 - 국민: 초청장에 초청인 인감(서명) 날인 후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첨부 또는 공증
 - 교민: 교민 귀국보증각서(대사관 지정양식), 거주등록증 사본, 초청장에 초청인 인감 날인 또는 서명
 2. 초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귀화자: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출입국사무소 발급)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3.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배우자 초청: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배우자의 부모, 자녀 초청: 본인(귀화자) 및 배우자 또는 자녀의 출생증명서 E-Mongolia 출력본 제출
- ※ E-Mongolia 출력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출생증 원본 제출

H 거주자격자(F-2), 영주자(F-5) 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 신청대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만 19세 미만 자녀
- 사증종류: C-3-1(단기초청)

※ 영주·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초청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는, F-1/F-2 대상임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출생증명서(E-Mongolia 출력본 제출을 기본으로 함)
4. 가족관계 입증서류(배우자 초청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초청인 구비서류

1. 초청장(원본):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아래내용 필수 포함
 - 피초청인과 초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피초청인과의 관계, 초청기간, 초청목적, 보증사항 등
- 국민: 초청장에 초청인 인감(서명) 날인 후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첨부 또는 공증
- 몽골인: 초청장 및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동의서 제출(공증 필요)
- ※ 초청장 양식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대사관 초청장 양식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 양식의 초청장도 사용 가능(다만 대사관 초청장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2. 초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과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3.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I

취재(D-5), 종교(D-6), 주재(D-7), 투자(D-8), 무역경영(D-9), E계열(E-9 제외)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19세 미만 자녀)

- 신청대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만 19세 미만 자녀
- 사증종류: C-3-1(단기초청)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혼인관계증명서
4. 가족관계 입증서류

초청인 구비서류

1. 초청장(원본): 초청장에 초청인 인감(서명) 날인 후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첨부 또는 공증
 - 피초청인과 초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피초청인과의 관계, 초청기간, 초청목적, 보증사항 각서내용 등
- ※ 초청장 양식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 대사관 초청장 양식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 양식의 초청장도 사용 가능(다만 대사관 초청장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2. 초청자 외국인등록증 사본(앞 뒷면), 재직증명서
- ※ D-8 체류자의 경우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사실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

J

'C~F' 요건 해당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19세 미만 자녀)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혼인관계증명서
4. 가족관계 입증서류
 - 배우자 초청: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배우자의 부모, 자녀 초청: 본인(귀화자) 및 배우자 또는 자녀의 출생증명서(E-Mongolia 출력본 제출)
- ※ E-Mongolia 출력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출생증 원본 제출



3. 사증발급인정서

1) 발급대상: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자

2) 사증종류: 사증발급인정서 내용에 따라 신청 및 발급

신청인 공통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수수료 \$60
2. 여권/여권사본 1매
3.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인정서 발급번호(초청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발급)
4. 재입국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5. 표준입학허가서 사본(D-2 신청자에 한함)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제출서류 종류	비고
건강확인서	건강확인서는(별첨3 참고)
건강진단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일반항목 이외에 정신질환/AIDS/매독/B형간염 등 세부 항목의 감염여부가 포함되어야 함(몽골의 경우 보건부 건강기록부 제출)
결핵진단서	당관 지정 기관 진단서(당관 지정기관 목록은 별첨 2 참고)
범죄경력증명서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성실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재입국하고자 계절근로 사증 신청 시 건강진단서, 결핵진단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제출서류 종류	E-9	E-8	C-4	F-3/F-1-15	기타	
					90일 이하	90일 이상
건강확인서	O					
건강진단서	O	O	O			
결핵진단서	O	O	O	O		O
범죄경력증명서	O	O				



4. 외교·공무 (A-1, A-2)

1 외교(A-1)

1) 발급대상:

-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외국정부의 외교 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 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 받은 자 및 동반 가족에 한하여 발급
- 일반여권을 소지하는 자는 외교업무수행자 및 그 가족에 한함

2) 사증종류 (유효기간/체류기간): 단수(S): 3개월/90일, 91일 이상, 복수(M): 1년/90일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혼인관계증명서
 - 미성년자(19세 미만자)의 경우, 본인의 출생증명서(부모의 생년월일이 미기재된 경우 부모 신분증 사본)
4. 외교부 장관의 협조공문, 국제기구인 경우 사무국장 협조공문
 -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90일 이내의 외교활동은 사증면제협정 대상이며, 한국 주재 목적일 경우 협정에 따라 사증발급
5.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사본 등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6. 파견명령서, 출장 명령서 등 외교업무 수행을 증명하는 서류
7. 동반 가족의 경우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2 공무(A-2)

1) 발급대상:

-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 및 동반가족에 한하여 발급
- 일반여권을 소지하는 자는 공무수행자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및 그 가족에 한함
- 입국목적과 근무처에 따라 세분화: A-2-1(외국정부), A-2-2(국제기구), A-2-3(UN사), A-2-4(기타공무)

2) 사증종류 (유효기간/체류기간): 단수(S): 3개월/90일, 91일 이상, 복수(M): 1년/90일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혼인관계증명서
 - 미성년자(19세 미만자)의 경우, 본인의 출생증명서(부모의 생년월일이 미기재된 경우 부모 신분증 사본)
4. 외교부 장관의 협조공문 또는 관할 부처 공문, 국제기구인 경우 사무국장 협조공문(공무수행임을 입증하는 내용 명시)
 -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90일 이내의 공무 활동은 사증면제협정 대상이며, 한국주재 목적일 경우 협정에 따라 사증발급
5.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사본 등 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6. 파견명령서, 출장 명령서 등 공무수행을 증명하는 서류
7. 동반 가족의 경우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5. 일시취재 (C-1)

1) 발급대상:

- 몽골의 신문·방송·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 단기간 취재, 보도 활동을 하려는 자
- 외국의 보도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 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활동 하려는 자

2) 사증종류 (유효기간/체류기간): 단수(S): 3개월/90일

신청인 구비서류

-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혼인관계증명서
 - 미성년자(19세 미만자)의 경우, 본인의 출생증명서(부모의 생년월일이 미기재된 경우 부모 신분증사본 제출)
 4. 파견(출장)증명서
 5. 재직증명서 또는 기자증(외신보도증)
 6. 사업자등록증의 사본
-



6. 단기초청 (C-3-1)

1) 발급대상:

- 국내에서 개최되는 친선경기, 행사, 회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정부 기업 등에서 기술·기능을 연마하기 위해 단기 체류하고자 하는 자
- 단기초청(C-3-1) 및 단기상용(C-3-4)은 사증발급신청서상 본인이 기재한 입국목적 및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 그에 따라 사증 구분 처리

※ 상기 단기 초청 대상자여도 통상의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를 받는 경우, 단기취업(C-4-5) 사증 발급대상

※ 초청이란 invitation letter의 의미(방문허가의 의미가 아님)

2) 사증종류 (유효기간/체류기간): 단수(S): 3개월/90일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혼인관계증명서
 - 미성년자(19세 미만자)의 경우, 본인의 출생증명서(부모의 생년월일이 미기재된 경우 부모 신분증사본 제출)
4. 경제력 입증자료
 - 사업자: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장인: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증명서
 - 기타: 사증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간 유지된 본인명의 은행거래 내역서 등(공동명의 불가)

※ 은행거래내역서는 요약본을 제출함

※ 만19세 이하 또는 55세 이상은 동반가족과 함께 신청한 경우, 경제력 입증자료 제출 면제

5. 초청관련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 초청관련 서류 일체 원본제출, 공증 불필요)

○ 한국측 초청기관:

- 초청장(명단, 초청목적·사유, 경비 부담사항, 초청기간 기재 필수)

※ 초청 기관에서 쓰는 별도 양식이 없는 경우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초청장 양식 다운 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협조요청공문(초청장에 협조요청 내용 포함 가능)
- 행사(교육, 연수, 세미나, 업무 협의 등) 일정, 행사 소개 및 개요, 입국목적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 몽골측 피초청인 및 기관:

- (단체초청의 경우) 협조요청공문,
- (개인의 경우) 사유서

■ 대한체육회 초청

대한체육회나 산하단체의 초청장 또는 관련 부처 장관명의 협조요청 공문을 제출할 경우, 경제력 입증자료 제출면제

※ 대한체육회 산하단체 리스트 참조 필요(www.sports.or.kr)



7. 일반관광 (C-3-9)

- 1) **발급대상:**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을 관광하거나, 대한민국의 공·항만에서 항공기·선박을 갈아타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자
- 2) **사증종류 (유효기간/체류기간):** 단수(S): 3개월/90일, 더블(D): 6개월/90일, 복수(M): 3년, 5년/90일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경제력 입증자료
 - 사업자: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장인: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증명서
 - 기타: 사증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간 유지된 본인명의의 은행거래 내역서 등(공동명의 불가)

※ 은행거래내역서는 요약본을 제출함

※ 다만 한국에 고용허가제(E-9-1)로 근무하는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사증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간 직계가족에게 송금 한 입증 서류(송금장 등 원본서류) 및 은행 내역서(원본), 외국인 등록증 사본(앞 뒤)

4. 혼인관계증명서

- 미성년자(19세 미만자)의 경우, 본인의 출생증명서(부모의 생년월일이 미기재된 경우 부모 신분증사본 제출)

※ 만19세 미만 또는 55세 이상은 동반가족과 함께 신청한 경우, 경제력 입증자료 제출 면제

사망자 가족인 경우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경제력 입증자료
4. 사망진단서
5. 몽골 외교부 협조 공한
6. 혼인관계증명서, 친인척관계증명서



8. 의료관광 (C-3-3)

1) 발급대상: 환자 본인 및 동반가족

- 동반가족: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및 배우자

-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없거나 환자의 간병을 위해 교대가 필요한 경우 형제·자매까지 허용

※ 간병인의 경우 환자송출계약국가의 국비지원 환자를 간호하는 간병인만 허용(몽골은 환자송출 계약국가 아님)

2) 몽골지정병원: 국립외상센터, 국립암센터, 제1, 제2, 제3종합병원, 국립모자병원, 인터메드병원, 그랜드메드병원, UB송도병원

※ 몽골지정병원 진단 내용은 국내 초청장 진료목적에 부합해야 함.



동반가족과 간병인이 환자와 동반 입국이 아닌 경우 의료관광(C-3-3) 사증 대상에 해당 안됨

신청인 공통 구비서류

1. 초청장(원본서류 필수, 사본불가)
2. 진료예약증
3. 국내병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외국인환자유치기관확인서 사본

1

과거 의료관광(C-3-3) 자격으로 국내 2회 이상 방문자(환자 본인에 한함)

신청인 구비서류

- 1~4. 공통 구비서류
5.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6. 여권/여권사본 1매
7. 신청요건 입증자료: 사증 및 출입국 도장 날인면 사본(제도 개선으로 사증 및 출입국심사인 입증이 안될 경우에는 면제하고 확인서로 갈음)
8. 혼인관계증명서
9. 과거 치료 이력을 증빙하는 자료(병원 진단서 및 체류기간과 치료기록 간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10. 경제력 입증자료
 - 사업자: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장인: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증명서
 - 기타: 사증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간 유지된 본인명의의 은행거래 내역서 등(공동명의 불가)

※ 상기 경제력 입증 자료가 대한민국 병원의 통상적인 치료비 및 체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함

2 진료(수술)비 한화 1000만원 이상 사전 납부자(환자 본인에 한함)

신청인 구비서류

1~4. 공통 구비서류

5.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6. 여권/여권사본 1매

7. 사전납부 영수증(직계가족의 명의로 송금 가능)

- 한국측 병원 사전납부 확인서, 송금장, 은행거래내역서, 카드 또는 현금매출전표 등 송금인과 수령인이 명시되어야 함

8. 몽골지정병원 진단서

9. 혼인관계증명서

10. 경제력 입증자료

- 사업자: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장인: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증명서

- 기 타: 사증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간 유지된 본인명의의 은행거래 내역서 등(공동명의 불가)

※ 상기 경제력 입증 자료가 대한민국 병원의 통상적인 치료비 및 체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함

3 국내 수술 예정자(환자 본인에 한함)

신청인 구비서류

1~4. 공통 구비서류

5.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6. 여권/여권사본 1매

7. 몽골지정병원 진단서 및 한국 내 병원 수술예약증

8. 혼인관계증명서

9. 경제력 입증자료

- 사업자: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장인: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증명서

- 기 타: 사증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간 유지된 본인명의의 은행거래 내역서 등(공동명의 불가)

※ 상기 경제력 입증 자료가 대한민국 병원의 통상적인 치료비 및 체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함

4 급성 중환자(환자 본인에 한함)

신청인 구비서류

- 1~4. 공통 구비서류
5.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6. 여권/여권사본 1매
 7. 혼인관계증명서
 8. 몽골지정병원 진단서
 9. 경제력 입증자료
 - 사업자: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장인: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증명서
 - 기 타: 사증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간 유지된 본인명의의 은행거래 내역서 등(공동명의 불가)

※ 상기 경제력 입증 자료가 대한민국 병원의 통상적인 치료비 및 체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함

5 고령 연금수령자(환자 본인에 한함)

신청인 구비서류

- 1~4. 공통 구비서류
5.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6. 여권/여권사본 1매
 7. 연금수령증
 8. 몽골지정병원 진단서
 9. 혼인관계증명서
 10. 경제력 입증자료(사증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간 유지된 본인명의의 은행거래 내역서(공동명의 불가))

※ 상기 경제력 입증 자료가 대한민국 병원의 통상적인 치료비 및 체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함

6 최근 2년 이내 1회 이상 한국내 수술기록 보유자(환자 본인에 한함)

신청인 구비서류

- 1~4. 공통 구비서류
5.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6. 여권/여권사본 1매
 7. 과거 진료기록 및 국내 진료예약증(진단서, 재진/정기검진 필요성 명시)
 8. 혼인관계증명서
 9. 경제력 입증자료
 - 사업자: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장인: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증명서
 - 기 타: 사증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간 유지된 본인명의의 은행거래 내역서 등(공동명의 불가)

※ 상기 경제력 입증 자료가 대한민국 병원의 통상적인 치료비 및 체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함

7

한국 내 자선기관 무료수술 예정자(환자 본인에 한함)

신청인 구비서류

1~4. 공통 구비서류

5.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6. 여권/여권사본 1매
7. 해당 자선기관 협조요청 공한
8. 몽골지정병원 진단서
9.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입증서류
10. 경제력 입증자료
 - 사업자: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장인: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증명서
 - 기 타: 사증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간 유지된 본인명의 은행거래 내역서 등(공동명의 불가)

※ 상기 경제력 입증 자료가 대한민국 병원의 통상적인 치료비 및 체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함

8

동반가족

신청인 구비서류

1~4. 공통 구비서류

5.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6. 여권/여권사본 1매
7.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입증서류



의료관광 복수 (C-3-3)

1) 발급대상: 환자 본인 및 동반가족

- 특정질병이 있는 것이 명백하고 복수로 입국할 필요성이 있는 자
- 동반가족: 환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직계가족(부모) 허용
- 최초 복수 발급대상자는 “입국목적별 구비서류 안내” 중 복수사증 대상으로 그 해당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 복수 의료사증으로 방문 경력이 있는 자는 국내 치료 기록이 분명한 경우
- ※ 국내 불법취업 의심 되는 경우는 제한

2) 사증종류 (유효기간/체류기간): 복수(M): 3개월/90일, 3년/5년

- 5년 복수사증: 3년 복수사증소지자로 체류실태가 건전한 자
- ※ 3년, 5년 복수사증신청은 소지하고 있는 복수사증 만료일 전 1개월부터 신청가능(예시: 2024.01.31 만료인 경우, 2024.01.01부터 신청가능)

1

복수로 체류가 필요한 환자(환자 본인에 한함)

신청인 구비서류

- 1~4. 공통 구비서류
- 5.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 6. 여권/여권사본 1매
- 7. 혼인관계증명서
- 8. 한국병원 초청장
 - 초청장에 복수로 체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확인 되어야 함.
- 9. 경제력 입증자료
 - 사업자: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장인: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증명서
 - 기타: 사증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간 유지된 본인명의의 은행거래 내역서 등(공동명의 불가)
- ※ 은행거래내역서는 요약본을 제출함
- ※ 상기 경제력 입증 자료가 대한민국 병원의 통상적인 치료비 및 체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함



의료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발급 몽골 지정병원

1 국립외상센터 National Trauma and Orthopedic Research Center

주 소	Damdinbazar Street, 7 khoroo, Bayangol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연락처	+976) 7018-0136
홈페이지	www.gemtel.mn

2 국립암센터 National Cancer Center of Mongolia

주 소	Namyangju Street, 18 khoroo, Bayanzurkh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연락처	+976) 72724000, 70150437
홈페이지	www.cancer-center.gov.mn

3 제1종합병원 The First Central Hospital of Mongolia

주 소	S.Zorig Street-2, 1 khoroo, Sukhbaatar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연락처	+976) 7711-1027
홈페이지	www.unte.moh.gov.mn

4 제2종합병원 Second State Central Hospital

주 소	Peace Avenue, 3 khoroo, Bayanzurkh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연락처	+976) 7015-0222, 7015-0234, 7015-0255
홈페이지	www.ssch.gov.mn

5 제3종합병원 Third State Central Hospital

주 소	Ard Ayush Avenue, 6 khoroo, Bayangol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연락처	+976) 7704-6666, 7700-0351
홈페이지	www.shastinhospital.mn

6 국립모자병원 National Center for Maternal and Child Health of Mongolia

주 소	Khuvisgalchid Street, 11 khoroo, Bayangol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연락처	+976) (11) 362205
홈페이지	www.ehemut.mn

7 인터메드 병원 Intermed Hospital

주 소	Chinggis Avenue, 19 khoroo, Khan-Uul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연락처	+976) 7701-1111
홈페이지	www.intermed.mn

8 그랜드메드 병원 Grandmed Hospital

주 소	Zaisan, 11 khoroo, Khan-Uul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연락처	+976) 7700-0066
홈페이지	www.grandmed.mn

9 UB송도 병원 UB Songdo Hospital

주 소	D.Choidog street 5, 1 khoroo, Sukhbaatar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연락처	+976) 7575-2727, 7011-1163
홈페이지	www.songdo.mn



9. 단기상용 (C-3-4)

1) **발급대상:**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 체류하려는 자

2) **사증종류 (유효기간/체류기간):** 단수(S): 3개월/90일, 더블(D): 6개월/90일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경제력 입증자료
 - 사업자: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장인: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증명서
 - 기타: 사증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간 유지된 본인명의의 은행거래 내역서 등(공동명의 불가)

※ 은행거래내역서는 요약본을 제출함

4. 초청장(명단, 초청목적·사유, 경비 부담사항, 초청기간 기재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초청 기관에서 쓰는 별도 양식이 없는 경우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초청장 양식 다운 가능**
5. 상용목적 입증자료: 구매계약서, 사업추진의향서, B/L, 수출입면장, 세금계산서, 외국환반입증 등
6. 혼인관계증명서



10. 단기취업 (C-4-5)

1) **발급대상:** 일시통행(연예활동 등), 광고·패션 활동,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용역 제공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수익이 따르는 계약에 의하여 국내 공·사기관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단기간 강의·강연 활동을 하는 경우

▶ 작품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전시회 참가 미술가 등도 포함

▶ 계절 근로 단기취업(C-4-1~4)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취업기간이 91일 이상일 경우 예술통행(E-6) 사증발급 대상자이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아 신청해야 함.

2) **사증종류 (유효기간/체류기간):** 단수(S): 3개월/90일, 더블(D): 6개월/90일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경제력 입증자료

- 사업자: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장인: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증명서

- 기타: 사증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간 유지된 본인명의의 은행거래 내역서 등(공동명의 불가)

※ 은행거래내역서는 요약본을 제출함

4. 혼인관계증명서

5. 초청장(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내용 포함)

6.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등

※ 영어캠프 등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을 하는자의 경우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등 평생교육시설 신고수리 관련 서류

7. 고용계약서, 용역계약서, 구매계약서 또는 주최측이 발급한 참가확인서

8. 소관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나 협조공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연예인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프로축구 등 운동선수, 지도자, 심판 등은 대한축구협회(연맹)의 추천

- 프로 바둑기사는 한국기원 등 소속 협회의 고용추천서

- 첨단기술인력(GOLD카드 또는 IT카드) 발급 대상자는 한국산업기술재단 또는 한국IT 벤처기업중소기업연합회의 추천서

- 외국 전문기술 인력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추천서를 고용입증서류로 대체 가능

※ 방한활동 목적에 따라 추가서류 징구 가능



11. 유학 (D-2)

1) **발급대상:**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연구를 하려는 자

- ▶ **GKS 정부초청장학생:** 수수료 면제
-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대학은 뒤쪽 **별첨 1** 참고(www.studyinkorea.go.kr)

2) **사증종류:** 2년 이내 단수사증

3) **대상 및 세부약호**

약호	대상자	비고
D-2-1	전문학사과정 유학	
D-2-2	학사과정 유학	
D-2-3	석사과정 유학	
D-2-4	박사과정 유학	
D-2-5	연구과정 유학	
D-2-6	교환학생 유학	
D-2-7	일·학습연계 유학	
D-2-8	방문학생	

4) **대상별 사증 발급 유형표:** '19.10.1부터 적용

대학별	학생유형별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	전자비자
우수인증대	유학(D-2-1~8)	O	O	O
인증대	유학(D-2-1~2,5,6,7,8)	O	X	X
	(D-2-3) (D-2-4)	O	X	O
일반대	유학(D-2-1~8)	O	X	X
하위대	유학(D-2-1~5,7)	O	X	X
	교환(D-2-6), 단기(D-2-8)	X	O	X

1 전문학사과정 이상 유학(D-2-1 내지 D-2-4)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x4.5cm 컬러사진 1매 및 수수료 \$60
 2. 여권/여권사본 1매
 3. 자기소개서(대사관 양식, MS Word 또는 한글 문서편집기 사용, 반드시 자필서명)
(GKS 정부초청장학생, 대학초청 전액 장학생, 우수인증대학 제외)
 4. 표준입학허가서 및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GKS 정부초청장학생인 경우 교육원장이 발급한 초청장, 복학생인 경우 추가로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
 5. 유학경비 부담능력 입증자료 및 예치증명서(GKS 정부초청 장학생, 우수인증대학 제외)
 - 예치증명서(*예치증명서에 증명서 발급일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본인 또는 부모의 몽골 은행잔고증명서(사증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
- ※ 예치증명서 발급일 기준 2,000만원 이상(수도권), 1,600만원 이상(비수도권) 상당액을 반드시 30일 이상 유지해야 하며, 심사일 현재 예치증명서에 기재된 예치일로부터 예치증명서 발급일*까지 예치 기간이 30일에 미달하는 경우 재정능력 미흡(예치규정 위반), (하위대학 유학생의 경우 6개월 이상 예치 잔고증명)
- 원화가 아닌 달러 등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증명서 발급 직전 분기별 기준일(1.1./4.1./7.1./10.1.) 환율로 계산
 - 대학 초청 전액 장학생인 경우 장학금과 예치금의 합이 예치규정 기준을 충족하면 인정
- 예) 수도권 유학생의 경우 표준입학허가서 1,000만원(장학금) + 1,000만원(예치금) = 2,000만원 충족
- ※ 부득이 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형제자매 가능
- 유학경비 부담능력 입증자료
- 수도권: 서울, 인천광역시, 경기도, 비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
- 해당계좌의 최근 3개월 간 거래내역(잔고증명 발급일까지)
 - 유학경비 지원확인서, 신분증 및 신청인과의 관계입증서류
 - 유학경비 부담자의 월수입 입증자료(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납세증명서 등)
6.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가 있는 미혼자는 자녀의 출생등록조회서 추가제출
 - 미성년자(19세 미만자)의 경우, 본인의 출생등록조회서(부모의 생년월일이 미기재된 경우 부모신분증 증명서 제출)
 7. 출생증명서(우수인증대학 제외)
 8. 범죄경력증명서(만 18세 이상, 최초 신청자에 한함)
 9. 결핵진단서(당관 지정기관 목록은 별첨 2 참고)
 10.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한국 및 몽골 졸업자의 경우 원본 가능)
 - 대학 재학생/증퇴자: 고등학교 졸업장, 대학 재학증명서, 전 학년 성적증명서
 - ④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받은 학위(학력) 등 입증서류
 - ④ 출신학교가 속한 주재국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학위 등 입증서류
 - ④ 중국의 경우: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 인증보고서(중국내 학력·학위 취득자에 한함)
 11. 어학능력 입증서류(어학능력 요건 요구 대상 대학인 경우에만 해당, '23. 7. 3부터 적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구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전문학사	3급 이상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중급1 과정 이상
뿌리산업양성학과(원화)	2급 이상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초급2 과정 이상
학사(전공심화) 이상	4급 이상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중급2 과정 이상
예체능 학과(원화)	3급 이상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중급1 과정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구분	입증서류
한국어능력시험(TOPIK)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세종학당 수료증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이수단계 표시되어야 함)
 -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④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 합격증*(KLCT), (중간평가 합격증)
 - ⑤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 ⑥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 ⑦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증명서(점수 표시되어야 함)

* ②와 ③은 5단계 이상 이수를 증명, ④는 4단계 이수(합격)를 증명, ⑤와 ⑥은 5단계 이상 이수(미이수에 체크되어 있더라도 허용)하되, 평가 합격을 증명

- 영어 능력: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 예외: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 또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중등·고등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해당국가의 중등·고등교육 이수 증빙서류(졸업증명서 등) 제출하면 영어 능력 기준 충족 간주

주의사항

1. 표준입학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2. 유학경비 부담자의 범위
 - 어학연수/유학 재정능력 부담주체: 1차적으로 부모가 일정수입/재정능력을 납세, 사회보험으로 입증하여야 함(보증인 재정능력 총액이 한화 97만원(250만 투그릭) 이상이어야 함)
 - 부모 사망 시: 2차적으로 형제 등 3촌 이내 친인척
 3. 잔고증명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상 유지되고, 사증심사 기간 동안 계속 유지
- 1년간 총 유학경비 산출: 학비 1년분 + 편도 항공료 + 생활비 월/미화 \$500(숙식비 + 용돈, 교재비 등 기타 잡비)

2

교환학생 유학(D-2-6)

1) **발급대상:**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에 의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

2) **사증종류:** 1년 이내 단수사증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및 수수료 \$60

2. 여권/여권사본 1매

3. 표준입학허가서 및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대학 간 체결한 학생교류 협정서, 초청 대학의 공문

5. 소속 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6. 소속 대학의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7. 재정능력 입증서류(우수인증대학 제외)

※ 학비, 생활비, 기타 비용이 본인부담인 경우 표준입학허가서에 표기된 금액을 30일 예치 및 예치증명서 발급

○ 예치증명서(*예치증명서에 증명서 발급일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본인 또는 부모의 몽골 은행잔고증명서(사증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

※ 예치증명서 발급일 기준 표준입학허가서에 표기된 상당액을 반드시 30일 이상 유지해야 하며, 심사일 현재 예치증명서에 기재된 예치일로부터 예치증명서 발급일*까지 예치 기간이 30일에 미달하는 경우 재정능력 미흡(예치규정 위반)

※ 부득이 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형제자매 가능

○ 유학경비 부담능력 입증자료

■ 수도권: 서울, 인천광역시, 경기도, 비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

- 해당계좌의 최근 3개월 간 거래내역(잔고증명 발급일까지)

- 유학경비 지원확인서, 신분증 및 신청인과의 관계입증서류

- 유학경비 부담자의 월수입 입증자료(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납세증명서 등)

8. 혼인관계증명서

※ 미성년자(19세 미만자)의 경우, 본인의 출생증명서(부모의 생년월일이 미기재된 경우 부모 신분증증명서 제출)

9. 범죄경력증명서(만 18세 이상, 최초 신청자에 한함)

10. 결핵진단서(당관 지정기관 목록은 별첨 2 참고)

11. 어학능력 입증서류(어학능력 요건 요구 대상 대학인 경우에만 해당, '19.10.1부터 적용)

- 한국어능력: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 영어능력: TOEFL 510

주의사항

1. 표준입학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2. 유학경비부담자의 범위:

- 어학연수/유학 재정능력 부담주체: 1차적으로 부모가 일정수입/재정능력을 납세, 사회보험으로 입증하여야 함(보증인 재정능력 총액이 한화 97만원(250만 투그릭) 이상이어야 함)

- 부모 사망 시: 2차적으로 형제 등 3촌 이내 친인척

3 방문학생(D-2-8)

1) **발급대상:** 해외 대학 정규 학위과정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서 1년 이하 정규 학위과정에서 자비로 유학하려는 자(GKS 정부초청장학생 포함)

2) **사증종류:** 1년 이내 단수사증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및 수수료 \$60
 2. 여권/여권사본 1매
 3. 표준입학허가서 및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소속 대학의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5. 혼인관계증명서
- ※ 미성년자(19세 미만자)의 경우, 본인의 출생증명서(부모의 생년월일이 미기재된 경우 부모 신분증 증명서 제출)
6. 재정능력 입증서류(GKS 정부초청장학생, 우수인증대학 제외)
 7. 범죄경력증명서(만 18세 이상, 최초 신청자에 한함)
 8. 결핵진단서(당관 지정기관 목록은 별첨 2 참고)

주의사항

1. 표준입학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2. 유학기간이 90일 이하일 경우 수수료 면제
3. 학위와 무관한 단기 아카데미 과정, 특강 등은 단기유학에서 제외됨



12. 어학연수 (D-4-1)

1) **발급대상:**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상기 교육기관에서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

- ▶ **GKS 정부초청장학생:** 수수료 면제
-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대학은 뒤쪽 **별첨 1** 참고(www.studyinkorea.go.kr)

2) **사증종류:** 6개월 이내 단수사증

3) **대상(세부약호):** 한국어연수(D-4-1), 외국어연수(D-4-7)

4) **대상별 사증 발급 유형표:** '19.10.1부터 적용

대학별	학생유형별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	전자비자
우수인증대	어학연수(D-4-1)	O	O	X
인증대	어학연수(D-4-1)	O	X	X
일반대	어학연수(D-4-1)	X	O	X
하위대	어학연수(D-4-1)	X	O	X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1매 및 수수료 \$60
 2. 여권/여권사본 1매
 3. 자기소개서(대사관 양식, MS Word/한글 등 문서편집기 사용, 반드시 자필서명), (GKS 정부초청장학생, 대학초청 전액 장학생, 우수인증대학 제외)
 4. 표준입학허가서 및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GKS 정부초청장학생인 경우 교육원장이 발급한 초청장)
 5.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 구성표), 연수과정 운영 현황(대학 자율 서식)
 6. 유학경비 부담능력 입증자료 및 예치증명서(GKS 정부초청장학생, 우수인증대학 제외)
 - 예치증명서(*예치증명서에 증명서 발급일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본인 또는 부모의 몽골 은행잔고증명서(사증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
- * 예치증명서 발급일 기준 1,000만원 이상(수도권), 800만원 이상(비수도권) 상당액을 반드시 30일 이상 유지해야 하며, 심사일 현재 예치증명서에 기재된 예치일로부터 예치증명서 발급일*까지 예치 기간이 30일에 미달하는 경우 재정능력 미흡(예치규정 위반)
- 대학 초청 전액 장학생인 경우 장학금과 예치금의 합이 예치규정 기준을 충족하면 인정
예) 수도권 유학생의 경우 표준입학허가서 500만원(장학금) + 500만원(예치금) = 1,000만원 충족
- 유학경비 부담능력 입증자료
 - 해당계좌의 최근 3개월 간 거래내역(잔고증명 발급일까지)
 - 유학경비 지원확인서, 신분증 및 신청인과의 관계입증서류
 - 유학경비 부담자의 월수입 입증자료(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납세증명서 등)
7.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가 있는 미혼자는 자녀의 출생등록조회서 추가제출
 - 미성년자(19세 미만자)의 경우, 본인의 출생등록조회서(부모의 생년월일이 미기재된 경우 부모신분증 증명서 제출)
 8. 출생증명서(우수인증대학 제외)
 9. 범죄경력증명서(만 18세 이상, 최초 신청자에 한함)
 10.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한국 및 몽골 졸업자의 경우 원본 가능)
 - 대학재학생/중퇴자: 고등학교 졸업장, 대학 재학증명서, 전 학년 성적증명서
 - ①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받은 학위(학력) 등 입증서류
 - ④ 출신학교가 속한 주재국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학위 등 입증서류
 - ⑤ 중국의 경우: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 인증보고서(중국내 학력·학위 취득자에 한함)
11. 결핵진단서(당관 지정기관 목록은 별첨 2 참고)

주의사항

1. 표준입학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2. 유학경비부담자의 범위
 - 어학연수/유학 재정능력 부담주체: 1차적으로 부모가 일정수입/재정능력을 납세, 사회보험으로 입증 하여야 함(보증인 재정능력 총액이 한화 97만원(250만 투그릭) 이상이어야 함)
 - 부모 사망 시: 2차적으로 형제 등 3촌 이내 친인척
3. 잔고증명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상 유지되고, 사증심사 기간 동안 계속 유지
 - 6개월간 총 유학경비 산출: 학비 6개월분 + 편도 항공료 + 생활비 월/미화 \$500(숙식비 + 용돈, 교재비 등 기타잡비)



13.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 (D-4-3)

1) **발급대상:**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청 전액 장학금 조건부 외국인 유학생

2) **사증종류:** 6개월 이내 단수사증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1매 및 수수료 \$60
2. 여권/여권사본 1매
3. 입학허가서(입학허가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4. 초청단체 공문
5. 초청단체 법인등기부등본
6. 장학증서
7.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8. 출생증명서
9. 범죄경력증명서(만 18세 이상, 최초 신청자에 한함)
10.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자에만 해당)
11. 결핵진단서(당관 지정기관 목록은 별첨 2 참고)



14. 법인에 투자 (D-8-1)

1) **발급대상:**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연구 분야에서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증명서 원본
6.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본부(제9조의4)」 또는 「연구개발시설(제16조)」은 지정서 및 근무인력 명단(성명, 직책, 학력, 연구경력, 근무분야 등) 추가 제출
7. 투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①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④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8.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필요 시 징구)
9. 결핵진단서(당관 지정기관 목록은 별첨 2 참고)
10. 범죄경력증명서
11. 혼인관계증명서
12. 출생증명서(본인, 자녀)



15. 무역경영 (D-9-4)

1) **발급대상:**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신고 후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본금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해당자), 투자기업등록증(소지자)
4. 공동사업약정서 원본 및 사본(해당자)
※ 총 자본금, 자본 및 수익금 분배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5. 사업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해당국세관 반출신고서 등
6.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 수출입면장, 부가세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등
7. 영업실적 입증서류
 - 수출입면장, 부가세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등
8. 국민고용예정서약서(해당자), (대사관 홈페이지 양식 참고)
9. 결핵진단서(당관 지정기관 목록은 별첨 2 참고)
10. 범죄경력증명서
11. 혼인관계증명서
12. 출생증명서(본인, 자녀)
13.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 사증신청 전 단기사증(C-3-4)등을 소지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만 해당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16. 구직활동 (D-10)

1) **발급대상:**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행(E-6),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

2) **사증종류:** 6개월 이내 단수사증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및 수수료 \$60
2. 여권/여권사본 1매
3. 경력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4. 성적증명서(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에만 해당)
5. 수료증명서***(연구기관 연구활동 수료자에만 해당)
6. TOPIK 4급 유효 성적표(해당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 81점 이상(해당자)

7 구직활동 계획서

8 구직활동 부담능력 입증자료

- 본인 또는 부모의 몽골 은행잔고증명서(사증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

* 예치증명서 발급일 기준 미화 \$4,500 상당액을 반드시 30일 이상 유지해야 하며, 심사일 현재 예치증명서에 기재된
예치일부터 예치증명서 발급일*까지 예치기간이 30일에 미달하는 경우 재정능력 미흡(예치규정 위반)

*예치증명서에 증명서 발급일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부득이 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형제자매 가능

9 혼인관계증명서

10 범죄증명서(만 18세 이상, 최초 신청자에 한함)

11 결핵진단서(당관 지정기관 목록은 별첨 2 참고)

주의사항

* 세계 500대 기업 근무경력자는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만 제출가능, 학력증명서 제출 불필요

** 세계 200대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위증 중 하나만 제출 가능, 성적증명서 제출 불필요

*** 국내연구기관 수료증명서에는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주제, 연구기간, 수료 여부 등을 명기하여 발급한 수료증명서 제출



17. 방문동거 (F-1)

1) 발급대상:

-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F-1-3)
-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1-9)
- 외국인 유학생(고등학교 이하) 동반 부모로 해당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비 부담 외국인 유학생의 2촌 이내의 친인척으로서 재정요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로서 외국인 유학생 1명당 1명 허용(F-1-13)
-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공관원과 동일국적), (F-1-21)
-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F-1-22, F-1-23, F-1-24)

2) 사증종류: 1년 이내 단수사증

신청인 공통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범죄경력증명서(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최초 신청자에 한함)
4. 혼인관계증명서
 - 미성년자(19세 미만자)의 경우, 본인의 출생증명서(부모의 생년월일이 미기재된 경우 부모 신분증사본 제출)
5. 결핵진단서(당관 지정기관 목록은 별첨 2 참고)

1**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F-1-3)**

신청인 추가 구비서류

- 1~5. 공통서류
6. 친척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7. 동거 또는 장기체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2**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호구지 관할 공관에 신청(F-1-9)

신청인 추가 구비서류

- 1~5. 공통서류
6.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거소 신고증 또는 사증 사본
7. 가족관계 입증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8. 주거요건 및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 주거요건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 등)
 - 소득요건 입증서류(재직증명서, 급여통장 또는 주거래통장 거래내역서 등)

3 외국인 유학생(고등학교 이하) 동반 부모 (F-1-13)

신청인 추가 구비서류

- 1~5. 공통서류
- 6. 외국인유학생(고등학교 이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7. 가족관계 입증서류
- 8. 체재비 입증서류(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등)
 - 국내의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인증 또는 공증)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소유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증명
 - 연간소득 3,740만원 이상 또는 1억 9,9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보유 등 재정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4 주한 외국 공관원의 가사보조인(공관원과 동일국적), (F-1-21)

신청인 추가 구비서류

- 1~5. 공통서류
- 6. 외국공관의 협조공문
- 7. 고용계약서
- 8.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5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F-1-22, F-1-23, F-1-24)

신청인 추가 구비서류

- 1~5. 공통서류
- 6.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사본
- 7. 고용주의 재직증명서(신분증명서)
- 8. 고용주의 소득 요건 입증 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9. 고용중인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 서류(투자금액 미화 50만불 미만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10.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
- 11. 신원보증서
- 12. 가사보조인의 졸업증명서 등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13. 1년 이상 고용주의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18.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F-1-5)

1) 발급대상: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양육지원(임신 또는 돌봄) 결혼이민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입국이 필요한 경우 신청일 기준,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 초청가능(자녀 1명당 1인(부모동시 또는 순차 초청 가능), 한명당 최대 2회) - 한부모 또는 다자녀(미성년 자녀 3명이상) 신청일 기준, 자녀가 만12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 초청가능(자녀1명당 1인(부모 동시 순차 초청가능), 초청횟수 제한 없음)
피초청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결혼이민자의 부모 2) 결혼이민자의 부모 모두 사망 또는 질병, 고령의 이유로 국내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 「민법」상 성년인 형제자매 및 전혼관계 출생자녀 <p>※ 다만,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자녀에게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초청가능</p>

양육지원 대상인 자녀의 범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국적법이 정한 국적취득(예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귀하허가 등) 신고·신청이 접수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자녀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 2) (추가) 결혼이민자의 혼인 전 출생자녀로서 한국인 배우자에게 입양된 자녀
- 3)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의 친자

취학의무 불이행 시 초청제한

- 자녀가 취학연령에 해당하지만 초청인이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국 가족 초청제한
-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또는 상급 학년 진학이 유예(연기)된 경우에는, 연령 기준을 초과 하더라도 초등학교 3학년 9월말(일반) 또는 6학년 9월말(한부모·다자녀)까지 초청 가능

2) 사증종류 (유효기간/체류기간): 단수(S): 3개월/90일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비취업 서약서
4. 결혼이민자 가족관계 입증서류:

부모	- 출생증명서, 입양증명서(양부모),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증명서 E-Mongolia 출력본, 가족사진
형제자매	- 결혼이민자 출생증명서, 피초청자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증명서 E-Mongolia 출력본 - 가족사진
전혼관계 자녀	- 출생증명서, 해당 증명서 E-Mongolia 출력본, 가족사진

※ 가족관계입증 필요시 DNA검사 결과 보완 요구

5. 부모 입국 불가사유 및 입증서류(해당자)

- 만60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입국이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질병 또는 사망 증명서류(당관 병원 진단서)

※ 몽골지정병원: 국립외상센터, 국립암센터, 제1, 제2, 제3 종합병원, 인터메드 병원, 그랜드메드 병원, UB송도 병원

6. 결핵진단서(당관 지정기관 목록은 별첨 2 참고)

※ 「입국규제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입국규제 기간을 준용하여 사증발급을 제한. 단, 불법 취업에 대해서는 사건종결일부터 5년간 사증발급 제한.

초청인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2. 초청장 원본(지정양식): 인감 날인 시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 신원보증서(보증기간: 입국한 날로부터 3년)
 -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
 3. 국내 가족관계 증명서류(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 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친양자의 경우 초청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추가제출
4. 자녀가 취학연령인 경우 재학명증서(**해당자**)
 5. 인도적 사유 입증서류(**해당자**)
 - (중증질환)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사실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 등
 - (중증장애) 장애인증명서 등
- (중증질환 또는 장애)
-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의 '종합장애 정도'란에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중증장애로 인정
- ▶ 초청인이 결혼이민 영주 자격 등록외국인인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해당 서류 제출
- ▶ 초청인이 한부모 가족인 경우: 자녀명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前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 초청인 또는 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건 종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본국 가족 초청 가능, 인도적 사유 시 1년 경과 후 초청 가능



19. 거주 (F-2)

1) 발급대상: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 또는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F-2-2)
- 영주자격(F-5) 소지자의 배우자(F-2-3)

2) 사증종류: 1년 이내 단수사증

1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 사증(F-2-2)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범죄경력증명서(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최초 신청자에 한함)
4. 결핵진단서(당관 지정기관 목록은 별첨 2 참고)

초청인 구비서류

1. 초청장(대사관 지정양식): 초청장에 초청인 인감(서명) 날인 후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또는 공증
2. 신원보증서(대사관 지정양식, 보증기간: 입국일로부터 2년)
3. 가족관계 입증서류(출생증명서 또는 유전자검사확인서류 등 친자관계 입증할 수 있는 공적 서류)
4. 주거요건 입증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해당자)
5. 초청인 경제입증서류: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등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 ※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본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 및 배우자(피초청인)의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 이상일 것
- ※ 2023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44,050,000원
- ※ 단, 동거가족 수가 3인 이하인 경우 GNI의 70% 이상(30,835,000원)
6. 국민이 외국인 자녀 초청 경우, 양육권 보유 관계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와 동일한 국적을 보유한 해당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 ※ 주의사항: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 서류 또는 공증증서

2 영주자격(F-5) 소지자의 배우자 사증(F-2-3)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범죄경력증명서(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최초 신청자에 한함, 최근 45일 이내 발급)
4. 혼인관계증명서
 - 미성년자(19세 미만자)의 경우, 본인의 출생증명서(부모의 생년월일이 미기재된 경우 부모신분증사본 제출)
5. 건강진단서(사증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된 것
 - 일반항목 이외에 정신질환, 성병, 후천성면역 결핍증, 결핵 등이 포함되어야 함

초청인 구비서류

1. 초청장(대사관 지정양식): 초청장에 초청인 인감(서명) 날인 후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또는 공증
 2. 결혼배경진술서(지정 양식)
 3. 신원보증서(지정 양식, 보증기간: 입국일로부터 2년)
 4. 외국인등록증 사본
 5. 혼인관계 입증서류(영주자격소지자의 국가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6. 초청인 제정(소득) 입증서류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등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 ※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본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 및 배우자(피초청인)의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 이상일 것
- ※ 2023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44,050,000원
- ※ 단, 동거가족 수가 3인 이하인 경우 GNI의 70% 이상(30,835,000원)
7. 주거요건 입증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해당자)
 8. 혼인당사자 쌍방의 범죄경력증명서
 9. 건강진단서(사증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된 것
 - 일반항목 이외에 정신질환, 성병, 후천성면역 결핍증, 결핵 등이 포함되어야 함
 10. 재혼인 경우 이혼증 또는 이혼판결민사조회서 사본
- ※ 주의사항: 초청인이 영주(F-5)자격 취득 이후 3년이 경과할 것, 단, 국민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해당



20. 동반 (F-3)

1) **발급대상:** D-1, D-2, D-4, D-5, D-6, D-7, D-8, D-9, E-1 내지 E-7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단, 기술연수(D-3) 제외)

※ 유학(D-2) 체류자격으로 국내 대학의 학사 학위 이상 학위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자에 한해 신청

※ 전문학사(D-2-1), 교환학생(D-2-6), 방문학생(D-2-8), 어학연수생(D-4-1-7)은 2년 이상 유학자에 한해 신청

2) **사증종류:** 1년 이내 단수사증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범죄경력증명서(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최초 신청자에 한함)
4. 가족관계 입증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 경우 출생증명서 등 제출
5. 결핵진단서(당관 지정기관 목록은 별첨 2 참고)

초청인 구비서류

1. 초청장(대사관 지정양식): 초청장에 초청인 인감(서명) 날인 후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또는 공증
- 귀국보장 각서내용 포함
-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
2. 초청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뒷면)
3. 재학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성적증명서
4. 임차계약서(공증 필요)
5. 예금 잔고증명서(최근 3개월 거래내역서) 또는 납세사실증명서

※ 주의사항:

-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 및 임차계약서 잔여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
- 초청관련서류 원본제출



21. 결혼이민 (F-6)

1) **발급대상:** 한국에 유효하게 혼인이 성립되어 있고,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동거를 위해 대한민국에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2) **발급요건:**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기준 등)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함

-
-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심사 기준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다른 배우자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단지 국내 입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 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 초청인이 혼인 귀화자로서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단, 혼인단절(「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 또는 자녀양육(「국적법」 제6조 제2항 제4호) 요건으로 귀화한 경우에는 적용제외
-

3) 접수방법: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KVAC)에 접수('20.3.16. 시행)

○ 결혼이민 사증신청 불허자: 불허일로부터 6개월 이후 재신청 가능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6개월 미경과시에도 재신청 가능

- 결혼이민 사증 발급 신청자가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 사증발급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전에 혼인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결혼 동거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재외공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처리기간: 통상 1개월이나, 정밀심사, 영사면담 또는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특히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이 규제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처리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 사본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원본 서류 제출
- 임신 및 출산으로 요건 면제를 받으려는 신청인은 결혼이민(F-6) 사증발급요건심사면제 요청서 작성(**별첨 5**)
※ 후술한 친자관계 확인서 참고

피신청인(외국인 배우자)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4. 혼인관계증명서(초청자와 혼인관계가 성립된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5. 의사소통 입증 관련 서류

구분	제출서류 종류
한국어	세종학당 이수증 또는 수료증 ※ 한국어 초급과정 120시간 이상(2021.01.04 이후부터 발급된 경우 인정)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성적증명서(한국어능력시험(TOPIK) IBT 1급 이상 증명서 포함)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이수증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그 외 언어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출신 귀화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 서류
공통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 다만,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20주가 지난 경우 심사 기준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청인(한국인 배우자) 구비서류

1.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대사관 홈페이지에서 결혼이민(F-6) 초청장 지정양식 다운로드), 인감 날인 시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2. 신원보증서(지정 양식, 보증기간: 입국일로부터 2년,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3. 여권사본 1매
4.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과거혼인 이력이 모두 포함된 상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5. 소득요건 입증서류(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 소득)

구분	제출서류 종류	비고
공통 (필수 제출)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전년도 소득 입증 (국세청에 신고된 모든 소득이 확인 가능하며 소득 신고가 없을 경우에도 소득금액 없음으로 제출) ※ 소득 과소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이 아닌 증빙서류를 통해 소득요건을 인정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관서에 소득 수정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을 제출
	신용정보조회서	전국은행연합회(필수)
근로소득 활용 시	원천징수 영수증	각 근무처에서 발급(근로소득 활용 시 필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소득 활용 시	기타 근로소득 입증서류	예시) 월급명세서 등 ※ 은행거래내역서는 근로소득 입증 서류로 원칙적 불인정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사업소득 활용 시 필수) 예시) 농지원부, 농어업 사실확인서 등(선택)
	기타 사업소득 입증서류	※ 소득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한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기타소득, 재산 활용 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기타 소득 활용 시 필수) 예시) 임대소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자소득: 은행거래내역서 등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 제출(재산활용 시 필수)
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활용 시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활용 시 필수)
	입증서류	

* 소득요건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와 있는 소득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2024년도 소득요건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u>22,095,654</u>	<u>28,287,942</u>	<u>34,379,478</u>	<u>40,174,410</u>	<u>45,710,214</u>	<u>51,089,964</u>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가구원 추가 1인당 5,379,750원씩 증가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소득요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임신(20주 이상), 출산
 - 해당하는 분은 친자관계확인서,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전 출생하여 국적취득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제출
- 부부가 비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 해당하는 분은 동거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
 - 부부가 함께 국내 입국하거나, 한국인 배우자의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 외국인 배우자가 사증 발급 신청 시 적용
-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6. 주거요건 입증서류:

-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 임대인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대상자의 경우 아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함
--	-------------------------------------

제출서류 종류	비고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초청장에 이수번호 기재 시 제출 생략
범죄경력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몽골인) 배우자(필수) ○ 한국인 배우자는 범죄경력증명서(면제)
건강진단서	한국인 및 외국인(몽골인) 각각 제출(사증발급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

1. 한국인 배우자

- 발급기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발행된 것을 제출
- 검사항목: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일반항목 이외에 정신질환, 결핵, 성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등 세부 항목의 감염여부가 포함되어야 함

2. 외국인(몽골인 배우자)

- 건강검진 세부항목은 한국인 배우자와 동일하며 AIDS/성병/정신질환/결핵 여부에 대한 검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각 아이막 종합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대형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아래의 경우에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 서류(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도 함께 면제가 됩니다.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배우자 임신(20주 이상),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 위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입증서류 즉, 교제경위서, 인우보증서, 사진, 이메일, 통화기록, SNS 대화내역, 출입국 기록(출입국심사 스탬프 등) 등을 제출하여 면제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자녀 출생·임신을 이유로 결혼이민(F-6-1) 자격 요건면제가 필요한 자는 후술하는 친자관계 확인서를 제출 필요

■ 결혼이민(F-6-1) 자격요건 면제 시 DNA검사를 통한 친자관계 확인

- 아래 표의 “친자관계 확인필요” 대상에 해당할 경우 DNA검사 결과 확인

친자관계 확인필요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배우자가 과거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1) 사증발급 불허전력이 있는 경우- 부부의 나이 차이가 20세 이상인 경우- 사증발급 신청일 기준 부부의 동거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다만, 임신 후 사증신청 시까지 외국인 배우자를 5회 이상 방문하거나, 임신 후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 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는 제외(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을 방문한 경우도 인정)-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재외공관장(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검찰청 DNA검사 의뢰(재외공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한 기관 중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받은 DNA검사 결과 제출- 주재국 법령에 따라 공인된 DNA검사 기관 중 재외공관장이 지정한 기관 <p>▶ 위 세 가지 방법 중 선택 활용</p>

- 임의 절차이므로 요건면제를 요청하는 사람에 한해 친자관계 확인
 - DNA검사 의뢰에 동의하지 않거나 검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요건면제 대상에서 제외
- 친자관계 확인서는 불법체류 다발 국가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위 서류 이외에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증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입증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해당 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에만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문서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 (건강진단서는 6개월)

※ 위 서류 외에도 혼인의진정성 심사에 보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제 사실 입증서류(함께 찍은 사진, 통화내역 등)를 제출하는 것도 사증발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별첨 1 외국인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대학 및 모집 제한대학

▶ 자세한 대학관련 정보는(www.studyinkorea.go.kr)를 참조바랍니다.

1

우수 인증대학[18교] (2024.3월부터 2025.3월까지 D-2, D-4 구분 없이 적용)

구분	대학명
일반대학(15)	건국대, 경북대, 계명대, 덕성여대, 동국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서경대, 성신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포항공과대, 한양대, 홍익대
대학원대학(3)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대

2

인증대 (2024.3월부터 2025.3월까지 체류자격 별 구분 적용)

■ 학위과정(D-2) 인증대[134교]

대학명	
일반대학(108)	가천대, 가톨릭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건국대(글로컬), 건양대, 경남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경성대, 경운대, 경일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광운대, 광주과학기술원, 광주대, 국민대, 군산대, 김천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국대(WISE), 동명대, 동서대, 동신대, 동아대, 동의대, 명지대, 목원대, 배재대, 백석대, 부경대, 부산대, 부산외국어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선문대, 성결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종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라대, 신한대, 아주대, 안동대, 안양대, 연세대, 연세대(미래), 영남대, 영산대, 우석대, 우송대,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부대, 중앙대, 창원대, 청주대, 충남대, 충북대, 포항공과대, 한국공학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외국어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동대, 한림대, 한밭대, 한서대, 한성대, 한세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호남대, 호서대, 홍익대
전문대학(12)	거제대, 경북대, 구미대, 부천대, 서울예술대, 영진전문대, 오산대, 용인예술과학대, 울산과학대, 인하공업전문대, 전주비전대, 한국영상대
대학원대학(14)	개신대학원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 국제언어대학원대,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 서울미디어대학원대, 서울외국어대학원대, 선학유피대학원대, 예명대학원대, 온석대학원대,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대,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 한국학대학원,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

■ 어학연수과정(D-4) 인증대[90교]

구분	대학명
일반대학(85)	가천대, 가톨릭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남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경성대, 경일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광운대, 광주대, 국민대, 김천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국대(WISE), 동서대, 동신대, 동아대, 명지대, 목원대, 배재대, 백석대, 부경대, 부산대, 부산외국어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선문대, 성결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신라대, 신한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미래), 영남대, 영산대, 우석대, 우송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부대, 중앙대, 청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공학대, 한국외국어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동대, 한서대, 한성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호남대, 호서대, 홍익대
전문대학(4)	경북대, 부천대, 영진전문대, 울산과학대
대학원대학(1)	선학유피대학원대

3

비자발급 제한대학 명단(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일 기준으로 인증제 평가 결과 적용)

■ 2022년 인증제 평가 결과 적용(2023.7월부터 2024.6월 발급 표준입학허가서)

학위과정(D-2) 비자제한[24교]		어학연수과정(D-4) 비자제한[15교]
신규(18)	가톨릭꽃동네대, 가톨릭상지대,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 대림대, 삼육대, 우송정보대, 유한대, 전남도립대, 종원대, 추계예술대, 한신대, 한영대	구미대, 대구보건대, 동아방송예술대,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 순천향대, 인하공업전문대
전년도 비자제한(14)	가야대, 대구공업대, 동양미래대, 성운대, 수성대, 용인대, 중앙승가대, 평택대	대구공업대, 대진대, 문경대, 상명대, 위덕대, 한동대
전년도 컨설팅(7)	국제대, 대구보건대, 삼육보건대, 위덕대	동원과학기술대, 전주대, 한양여자대

■ 2023년 인증제 평가 결과 적용(2024.7월 이후 발급 표준입학허가서)

학위과정(D-2) 비자제한[20교]		어학연수과정(D-4) 비자제한[10교]
일반대학(23)	남부대, 위덕대, 중앙승가대, 한신대, 수원대, 예원예술대, 전주대, 고신대, 금강대, 한라대	순천향대, 금오공과대, 동의대, 용인대, 동덕여대, 목포대, 상지대, 예원예술대, 유원대, 창원대, 초당대, 한라대 총신대
전문대학(14)	대구공업대, 우송정보대학, 동원과학기술대, 영남이공대, 전주기전대학, 제주한라대, 강원관광대, 한국승강기대	대구보건대, 동원과학기술대, 계명문화대, 청암대, 가톨릭상지대, 경북과학대,
대학원대학(3)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 에스라성경대학원대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

별첨 2 결핵검사 대사관 지정병원

1 국립외상센터 National Trauma and Orthopedic Research Center

주 소	Damdinbazar Street, 7 khoro, Bayangol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연락처	+976) 7018-0136
홈페이지	www.gemtel.mn

2 국립전염병센터 National Center for Communicable Diseases

주 소	Namyangju Street, 14 khoro, Bayanzurkh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연락처	+976) (11) 453849
홈페이지	www.nccd.gov.mn

3 제1종합 병원 The First Central Hospital of Mongolia

주 소	S.Zorig Street-2, 1 khoro, Sukhbaatar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연락처	+976) 7711-1027
홈페이지	www.unte.moh.gov.mn

4 제2종합 병원 Second State Central Hospital

주 소	Peace Avenue, 3 khoro, Bayanzurkh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연락처	+976) 7015-0222, 7015-0234, 7015-0255
홈페이지	www.ssch.gov.mn

5 제3종합 병원 Third State Central Hospital

주 소	Ard Ayush Avenue, 6 khoro, Bayangol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연락처	+976) 7704-6666, 7700-0351
홈페이지	www.shastinhospital.mn

6 그랜드메드 병원 Grandmed Hospital

주 소	Zaisan, 11 khoro, Khan-Uul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연락처	+976) 7700-0066
홈페이지	www.grandmed.mn

7 UB송도 병원 Songdo Hospital

주 소	D.Choidog street 5, 1 khoro, Sukhbaatar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연락처	+976) 7575-2727, 7011-1163
홈페이지	www.songdo.mn

8 Gyals 진단센터 Gyals Medical Center

주 소	Peace Avenue 64A, 4 khoro, Bayanzurkh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연락처	+976) 7575-4411
홈페이지	www.gyals.mn

9 SOS Medica Mongolia UB 국제진료소 SOS Medica Mongolia UB International Clinic

주 소	4a Building, Big Ring Road, 7 khoro, Bayanzurkh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연락처	+976) (11) 464325, 7711-4325
홈페이지	www.sosmedica.mn

СҮРЬЕЭГИЙН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УДАС

Certificate of TB(tuberculosis) Screening

Овог нэр(Name):	Хүйс(Sex): Эр(M) <input type="checkbox"/> Эм(F) <input type="checkbox"/>	Цээж зураг (Photo) 3.5cmx4.5cm
Төрсэн он, сар, өдөр(Date of Birth) / /	Утасны дугаар(Phone Number):	
Паспортын дугаар(Passport Number):	Хаяг(Address):	

I. Шинжилгээний асуулга(Medical examination results)

- Урд өмнө нь сүрьеэ өвчнөөр оношлогдож, эмчилгээ хийлгэж байсан эсэх (TB treatment history):
A. Үгүй (No) B. Тийм (Yes) C. Одоо эмчлүүлж байгаа (Under treatment)
- Сүрьеэ өвчний халдвартын сэжиглэгдэх шинж тэмдэг илэрч байгаа эсэх (Signs & Symptoms suggestive of TB): A. Үгүй (No) B. Тийм (Yes)
- Цээжний рентген зураг авхуулсан он, сар, өдөр(Date of Chest X-ray): _____ / _____ /
A. Хэвийн (Normal)
B. Эдгэсэн эсвэл сүрьеэ идэвхгүй болсон (Cured or Inactive TB)
C. Сүрьеэ өвчин оношлогдсон (Suspected active TB)
- Цэрний шинжилгээний он, сар, өдөр (Date of sputum examination): _____ / _____ /
1) Түрхцийн шинжилгээ (Sputum AFB smear): A. Сөрөг (Negative) B. Эзэрэг (Positive)
2) Өсгөвөрлөх шинжилгээ (Sputum M. Tuberculosis culture): A. Сөрөг (Negative) B. Эзэрэг (Positive)
3) TB PCR (TB PCR): A. Сөрөг (Negative) B. Эзэрэг (Positive) C. Хийгдээгүй (Not done)

II. Үр дүн(Interpretation)

- Сүрьеэгийн халдвартай өвчтөн биш (No active TB)
- Сүрьеэгийн идэвхтэй халдвартай, Сүрьеэгийн идэвхтэй халдвар сэжиглэгдсэн (Active TB or suspected TB)

Уг шинжилгээ дээрх байдлаар хийгдсэн.

The examination was performed as above

Эмчлэх эрхийн гэрчилгээний дугаар (License No.):

Эмчийн овог, нэр (Name of Physician):

(гарын үсэг/signature)

Шинжилгээний хариу хураангуй (Summary of the examination)	
Дээрх шинжилгээ хийлгэсэн иргэн БНСУ-д зорчих боломжтой эсэх (Remarks about examinee's domestic stay)	
Нэмэлт нарийн шинжилгээ шаардлагатай эсэх (Additional close examination)	* Шаардлагатай тохиолдолд эмчийн магадлгаа хавсаргах (Attach doctor's opinion letter, if needed)

Дээрх иргэний эрүүл мэндийн шинжилгээг баталгаажуулж хянасан болн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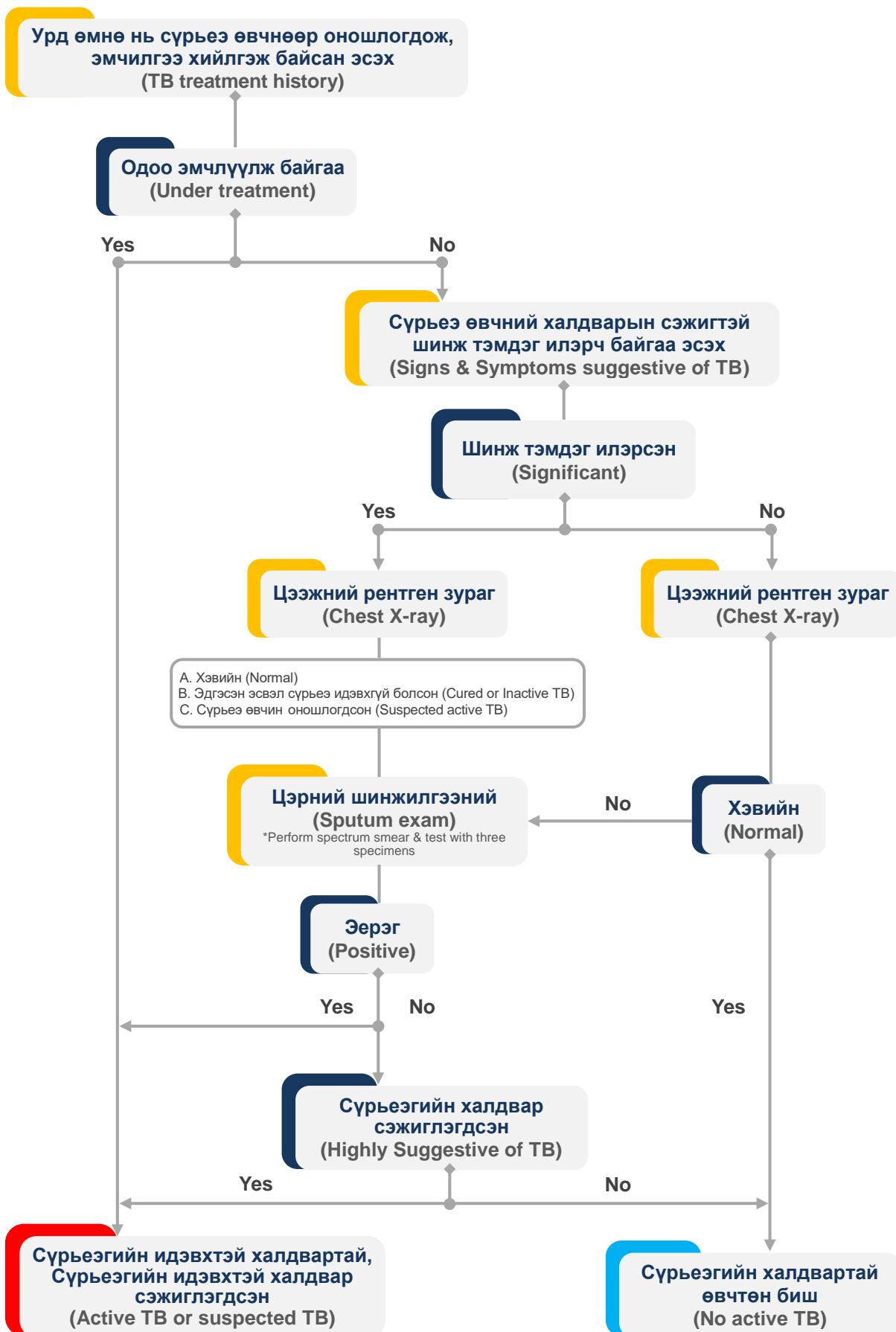
We hereby certify that the examinee's health status is assessed as above.

..... он сар өдөр

Шинжилгээ хийсэн газрын дарга
(Chief of Hospital)

(гарын үсэг/signature)

СҮРЬЕЭ ӨВЧНИЙ ШИНЖИЛГЭЭ ХИЙХ ДАРААЛЛЫН СХЕМ



E-9 자격 사증신청자 건강확인서

E-9 ВИЗ МЭДҮҮЛЭГЧИЙН ЭРҮҮЛ МЭНДИЙН АСУУМЖ

이 확인서는 대한민국의 비전문취업(E-9)자격의 사증을 신청한 외국인이 본인의 건강 및 심리상태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아래 기재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불허되거나 입국한 후에 체류허가의 취소 또는 강제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Үг эрүүл мэндийн асуумж нь БНСУ-д мэргэжлийн бус хөдөлмөр эрхлэх(E-9) ангиллын виз мэдүүлэгч гадаад иргэн өөрийн биеийн болон сэтгэцийн эрүүл мэндийн байдала тандаж бөглөх асуумж болно. Дараах асуумжийг дутуу эсвэл хуурамчаар бөглөсөн тохиолдолд, тухайн виз мэдүүлэгт татгалзсан хариу олго, БНСУ-ын хилээр нэвтрэсэн хойно оршин суух зөвшөөрлийг хүчингүй болгох, хилээр албадан гаргах зэрэг арга хэмжээ авч болзошгүй тул үнэн зөвөөр бөглөнө үү.

1) 성명 Ovog nэр	2) 생년월일 Tөрсөн он, сар, өдөр	
3) 국적 Иргэншил	4) 성별 Xүйс 남 Er <input type="checkbox"/> 여 Em <input type="checkbox"/>	5) 여권번호 Гадаад паспортын дугаар

6) 귀하는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습니까?

Ta олон нийтийн эрүүл мэндэд эрсдэл учруулах халдварт өвчнөөр өвчилиж байсан уу?

예 Tийм (질환명 Өвчний нэр: 매독 Тэмбүү, B형간염 Элэгний В виру스, 결핵 Сүрье) 아니오 Үгүй

7) 귀하는 최근 5년 이내에 통제된 물질(마약류)을 복용한 적이 있거나 알코올 등에 중독된 적이 있습니까?

Ta сүүлийн 5 жилд мансууруулах эм(сэтгэцэд нөлөөлөх бодис) хэрэглэх эсвэл архи согтууруулах ундаа гэх мэт зүйлд донтож байсан уу?

예 Tийм (복용물질 Хэрэглэж байсан бодис:) 아니오 Үгүй

8) 귀하는 과거 정신적, 감정적 또는 신경적 혼란으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Ta урд өмнө нь сэтгэцэд мэдрэлийн асуудлаар эмчилгээ хийлгэж байсан уу?

예 Tийм (질환명 Өвчний нэр:) 아니오 Үгүй

9) 최근 5년 이내에 심각한 질병, 상해 등을 겪은 사실이 있습니까?

Ta сүүлийн 5 жилд хүнд өвчин, гэмтэл авч байсан уу?

예 Tийم (질환명 및 치료경과 Өвчний нэр болон эмчилгээ:) 아니오 Үгүй

<유의사항>

귀하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할 경우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외국인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마약검사확인서(온라인 제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САНАМЖ>

Ta БНСУ-ын хилээр нэвтрээд 90 хоногоос дээш хугацаагаар байх тохиолдолд хилээр нэвтрэсэн өдрөөс 90 хоногийн дотор гадаад иргэний бүртгэлээ хийлгэх ёстой бөгөөд гадаад иргэний бүртгэл хийлгэхэд БНСУ-ын засгийн газраас заасан эмнэлгээс олгосон мансууруулах эм, сэтгэцэд нөлөөлөх бодисын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удсыг(цахимаар илгээх хамаарна)-г зайлшгүй өгөх шаардлагатай болно.

년 On 월 Cap 일 Thdor

신청인 Viz мэдүүлэгч:

(서명 또는 인 Гарын үсэг)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 귀하
БНСУ-аас Монгол Улсад суугаа Элчин сайд танаа

별첨 4 납세실적 100대 우수기업 2022

1	Oyu Tolgoi	51	Total Distribution LLC
2	Khan Bank	52	Capitron Bank
3	Energy Resources LLC	53	SBB Trade LLC
4	Golomt Bank	54	Magnai Trade LLC
5	NIK LLC	55	Transwest Mongolia LLC
6	Trade and Development Bank	56	Monpolymet LLC
7	APU JSC	57	Talkh chikher JSC
8	Shunkhlai LLC	58	Nomin Hypermarket LLC
9	Mobicom Corporation	59	Spirit Bal Buram JSC
10	MAK LLC	60	Support Services Mongolia LLC
11	Central Express CVS LLC	61	Tavan Bogd Foods LLC
12	Mo En Co LLC	62	Burdel Mining LLC
13	Xac Bank	63	MCS International LLC
14	Unitel LLC	64	Shunkhlaigobi LLC
15	COAL LLC	65	Voltam LLC
16	MCS Coca Cola LLC	66	Toyota Sales Mongolia LLC
17	Bodi International LLC	67	Zuunnaiman oil LLC
18	Sod Mongol Group LLC	68	Bayan Airag Exploration LLC
19	Bold Tumur Eruu Gol LLC	69	Tavan Bogd International LLC
20	Shunkhlai Trading LLC	70	TTJVCO LLC
21	Gobi	71	Uniservice Solution LLC
22	Tsairt Mineral	72	Worley Engineering LLC
23	Sky Hypermarket LLC	73	MCS Property LLC
24	Eco Global Logistics LLC	74	Skytel LLC
25	Max Group LLC	75	Minii Delguur LLC
26	Ulaanbaatar Management LLC	76	Usukhzoos LLC
27	Barloworld Mongolia LLC	77	GCR Mongolia LLC
28	Lex Oil LLC	78	Monospharma Trade LLC
29	Altan Joloo Group LLC	79	Monos Ulaanbaatar LLC
30	Shin Shin LLC	80	G-Mobile LLC
31	Boro Gold LLC	81	Oin Birj LLC
32	Nomin Tav Trade LLC	82	Suu JSC
33	Thiess Mongolia LLC	83	Tavan Bogd Foods Pizza LLC
34	MSM Group LLC	84	Shunkhlai Petroleum LLC
35	Jur Ur LLC	85	Asia Pharma LLC
36	Teso Foods LLC	86	Nomin Business Club LLC
37	Redpath Mongolia LLC	87	Gem International LLC
38	APU Trading LLC	88	Transport and Development Bank LLC
39	Khuren Tolgoi Coal Mining LLC	89	International Medical Center LLC
40	Univision LLC	90	Baylag Energy Resource LLC
41	TTC&T LLC	91	Altainzam LLC
42	VS Oil LLC	92	Arig Bank
43	Khishig Arvin Industrial LLC	93	Tavan Bogd LLC
44	Tes Petroleum LLC	94	Monsuli LLC
45	MAK Cement LLC	95	Monnider LLC
46	Altangadas Trade LLC	96	Altan Tarla LLC
47	Digital Concept LLC	97	We Internationl LLC
48	Mines Up LLC	98	Building Maintenance Service LLC
49	Achit Ikht LLC	99	Khanbogd Cashmere LLC
50	Petrostar LLC	100	Petro Khan LLC

별첨 5 결혼이민(F-6) 사증발급 요건 심사면제 요청서

결혼이민(F-6) 사증발급 요건 심사면제 요청서(재외공관)		
인적사항	사증발급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초청인(한국인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국적		
주소		
연락처		
심사면제 받고자 하는 요건(아래 각 요건의 □에 √표시)		
<input type="checkbox"/>	초청인이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는지 여부(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	
<input type="checkbox"/>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 초청하였는지 여부(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3호)	
<input type="checkbox"/>	초청인이 고시된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지 여부(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초청인과 신청인의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5호)	
<input type="checkbox"/>	신청인이 기초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할 수 있는지 여부(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6호)	
<input type="checkbox"/>	초청인이 가정폭력범죄 처벌 전력 등이 있는지 여부(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9호~12호)	
<input type="checkbox"/>	신청인이 사증발급 불허 후 6개월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시행규칙 제9조의5제3항)	
1. 신청인 _____ 은(는) 한국인 _____ 의 배우자이며, 년 월 일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영사과)에 결혼이민 사증발급을 신청하였습니다.		
2. 신청인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의 자녀는 년 월 출생할 예정입니다.		
3. 신청인과 한국인 배우자는 대한민국에 입국, 자녀 출산 후 6개월 이내 친자관계(부와 자녀, 모와 자녀)를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		
<p>*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출석하여 시료채취 후 검사 의뢰 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 신고한 기관 중 KOLAS 공인시험 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친자관계 확인 후 그 결과(공공기관 제출 용도로 발급)를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제출</p>		
4. 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출생한 자녀가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요건 심사면제 대상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요건 심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체류 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본인(신청인)은 위 안내(주의) 사항을 모두 이해하고 있으며, 표시된 요건의 심사면제를 요청합니다.	본인(한국인 배우자)은 위 안내(주의) 사항을 모두 이해하고 있으며, 표시된 요건의 심사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_____ (인)	년 월 일 성명 _____ (인)	

별첨 6 비자신청센터(KVAC) 및 공인대행기관 정보

A Key Bridge

주 소	2nd floor, Dream Plaza, 24 khoroo, Khan-Uul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연락처	+976) 7775-0001

B Hanmaum law

주 소	#203, Evergood building, 7 khoroo, Sukhbaatar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연락처	+976) 7711-9114, 7700-9114

C Buryat Ombol

주 소	#803, Khishig center, 2 khoroo, Chingeltei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연락처	+976) 7771-7111, 9405-0652

D Garnet Od

주 소	#101, North Center, 1 khoroo, Bayanzurkh distict, Ulaanbaatar, Mongolia
연락처	+976) 7011-0030

E Frontier Journeys

주 소	#920, Lagshan Office Center, 8 khoroo, Sukhbaatar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연락처	+976) 7588-7878

F G&SK Corporation

주 소	#19, 4th Floor, Dragon Bus Terminal, 29 khoroo, Songinokhairkhan, Ulaanbaatar, Mongolia
연락처	+976) 7722-7700, 7722-7744

G Busan (BORN FRESH)

주 소	#1210-1211, Ikh Nyad East Tower, 15 khoroo, Khan-Uul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연락처	+976) 7702-0008

H Od Maral ODC

주 소	6th Floor, Zaisan Center, 11 khoroo, Khan-Uul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연락처	+976) 7771-9191

I UMD

주 소	#502, J Tower,1 khoroo, Sukhbaatar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연락처	+976) 7777-8666

J Dido

주 소	UB SUITES, 2 khoroo, Bayanzurkh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연락처	+976) 7763-0000

L Ok Visa (O&K CONSTRUCTION)

주 소	#101, Landmark office, 1 khoroo, Sukhbaatar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연락처	+976) 7711-2422, 7711-2522

M Datsun

주 소	#505, Sakura Tower, 26 khoroo, Bayanzurkh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연락처	+976) 7599-0505

N Log Consulting

주 소	#403, Peace Avenue 59, 6 khoroo, Bayangol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연락처	+976) 7711-7786

O Tenger Altai Trade

주 소	#201, Goldenpen, 39B Building, 15 khoroo, Bayanzurkh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연락처	+976) 7010-6565

K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KVAC)

주 소	8th Floor, Shine Songolt Building, 3rd Khoroo, Khan Uul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연락처	+976) 7766-8888

홈페이지 www.visaforkorea.mn